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정태호 · 권철승 · 김문수
김 윤 · 김태선 · 진성준
김영환 · 황명선 · 조정식
한준호 · 홍기원 · 전현희
이수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7조제7항제4호 중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 ② (생략)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④ ~ ⑨ (생략)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7조(과태료) ① ~ ⑥ (생략)	제277조(과태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